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4. 1.

특 허 심 판 원
(심 판 정 책 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디자인심판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및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710호,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심판참고인의 선정 및 준수사항, 비용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의해 의견서에 변동을 주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에 따른 심판참고인의 선정기준 및 준수사항, 비용과 관련된 규정 신설

1) 심판장의 결정(직권사항)으로 의견청취를 결정하고, 참고인 선정시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회 등 공공성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2) 참고인은 서면으로 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고, 심판장은 제출된 서면 의견서를 당사자에게 사전 송달하고 서면 의견에 대한 의견제출기회(서면 또는 구술)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부여하며,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심결 후 공개하여 책임성·투명성 확보하도록 함

3)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하고, 참고인의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불산입함

나.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및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에 따른 의견서 서식
(별지 제1호) 정비

의견서 서식(별지 제1호)에 심판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표기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128조, 제142조의2(2024. 3. 15. 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9.~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 심리에 있어서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여 공중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참고인을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참고인을 지정할 때는 공공단체, 공공단체에 준하는 공신력이 있는 그 밖의 참고인을 선정한다.

③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참고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에게 지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76조의3(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등) ①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참고인은 심판원장이 정하는 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의견서에 대한 의견제출기회(서면 또는 구술)를 부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의견을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심결 후 공개한다. 다만 비밀유지가 필

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게시한다.

제76조의4(참고인의 수당 등) ① 법 제142조의2제4항에 따라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인의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심판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서류 구분]☐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 ☐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 심판사건 답변 ☐ 심판사건 의견
- ☐ 심판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견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심판번호])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직권보정 사항 중 ()번 사항)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8호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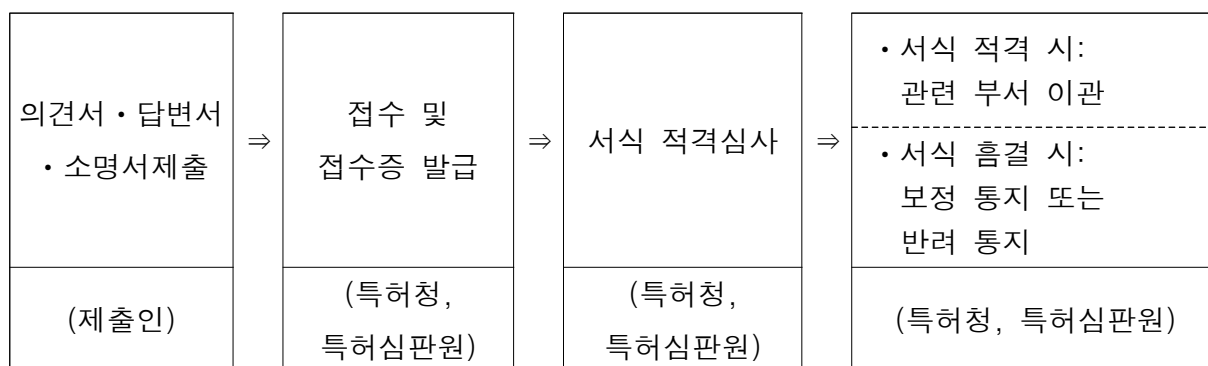
(뒤쪽)

1. 서류 구분 및 관련 규정

서류 구분	내용	관련 규정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사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 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통지한 직권보정 사항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나, 심판장이 통지한 심판청구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6조, 제128조제5항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심판사건 답변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심판사건 의견	참가신청에 대해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 결과를 통지받고 이에 대	「디자인보호법」 제144조 및 제147조

	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받은 권리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의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이의신청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부적합한 서류로 본다는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심판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당사자가 심판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3항

2. 처리절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6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①</u> <u>심판장은 심판사건 심리에 있어</u> <u>서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여 공</u> <u>중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u> <u>경우 직권으로 참고인을 선정하</u> <u>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u> <u>다.</u> <u>② 심판장은 법 제142조의2제1</u> <u>항에 따라 참고인을 지정할 때</u> <u>는 공공단체, 공공단체에 준하</u> <u>는 공신력이 있는 그 밖의 참고</u> <u>인을 선정한다.</u> <u>③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u> <u>참고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선정</u> <u>된 사람에게 지정 사실을 통지</u> <u>해야 한다.</u>
<u><신 설></u>	<u>제76조의3(참고인의 의견서 제출</u> <u>등) ①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u> <u>해 선정된 참고인은 심판원장이</u> <u>정하는 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u> <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u> <u>의견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u> <u>의견서에 대한 의견제출기회(서</u>

<신 설>

면 또는 구술)를 부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의견을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심결 후 공개한다. 다만 비밀유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게시한다.

제76조의4(참고인의 수당 등) ① 법 제142조의2제4항에 따라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인의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917